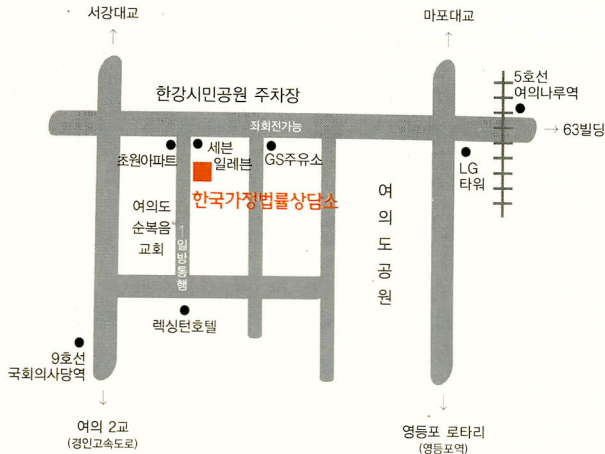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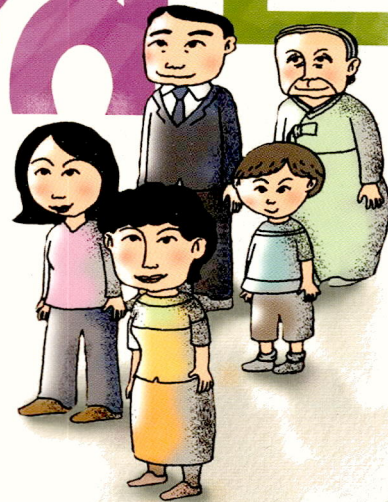


-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

개정민법

주요
내용



교통편

지하철 : 5호선 여의나루역 하차 (도보로 10분)
2번 출구로 나와 환승
753, 5713, 6633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차
9호선 국회의사당역 하차 (도보로 10분)
1번출구로 나와 환승 461, 263, 363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차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대표전화 ☎ 1644-7077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전화| 02-780-5688~9 / 782-3427 |전송| 02-780-0485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트위터| <http://twitter.com/LegalAidCenter>

3. 미성년자 입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승낙이 없어도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¹⁾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입양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미성년자 입양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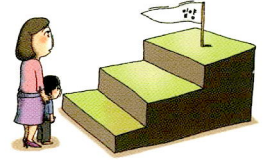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부모가 입양동의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6. 성년자 입양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성년자도 양자가 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1)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 될 사람이나 양자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입양할 수 있다.



7. 입양의 효력

▶▶▶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민법상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되어도 양자의 성과 본이 바뀌지는 않으며, 만일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8.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음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재판상 파양사유는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9.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연령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사람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3. 미성년자 입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승낙이 없어도 입양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4. 미성년자 입양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미성년자 입양시 부모가 동의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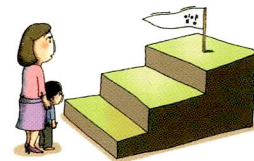
▶▶▶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부모가 입양동의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6. 성년자 입양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성년자도 양자가 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1)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 될 사람이나 양자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입양할 수 있다.



7. 입양의 효력

▶▶▶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민법상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되어도 양자의 성과 본이 바뀌지는 않으며, 만일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8.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로 파양할 수 없음

▶▶▶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재판상 파양사유는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9.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연령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19세 미만인 사람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10.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1. 친생부모 동의 없이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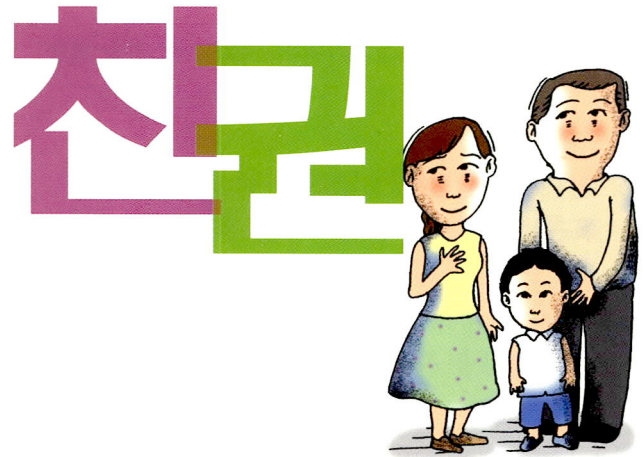
▶▶▶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12. 법정대리인의 동의, 승낙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²⁾.



2)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일 때,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및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1. 친권 자동 부활 폐지 - 법원의 심판을 통한 친권자 지정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³⁾.

2.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친권자지정청구 기각

▶▶▶ 가정법원은 친권자지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친권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3) 또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각하였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3. 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 혹은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⁴⁾을 선임

▶▶▶ 청구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부 또는 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됨).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⁵⁾나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⁶⁾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한다.

4.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친권자지정청구 가능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2013.7.1.부터 법정후견인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 또는 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1차로 미성년 후견인이 되고(지정후견인), 지정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5)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6)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또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5.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할 대행자의 선임

▶▶▶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6. 친권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고려하도록 함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7. 친권상실 등의 경우 친권자의 지정 또는 후견인의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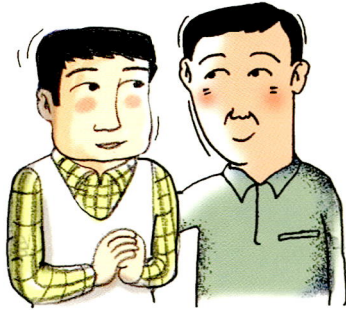


▶▶▶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단독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단독친권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장기간 의식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단독 친권자의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도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가능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도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



1. 성년후견제도란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재산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보호에 관한 폭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 지시스템으로써 고령자를 포함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 람도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잔존 능력을 활용할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 의후견이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 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 위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위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 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임 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구 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정도	청구권자	본인 (피후견인) 의 행위능력	후견인의 권한
법 정 후 견	성 년 후 견	지속적 결여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원칙적 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한 정 후 견	부족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특 정 후 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 필요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위능력자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임 의 후 견	임 의 후 견	부족	(임의후견감독인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위능력자 각 계약에 정한 바에 따름

2.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고, 임의후견은 본인이 후견계약 체결

▶▶▶ 법정후견은 후견개시청구권자가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후견개시심판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와 법인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임의후견은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후견개시 시점은 법정후견의 경우에는 심판 확정시,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시 이다.

3. 성년후견인의 임무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인 피성년후견인의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등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며, 혼인취소,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에 대하여 대리권이 인정되고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4. 피성년후견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음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한정후견선고를 받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6.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음

▶▶▶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한 후원만을 내용으로 하고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심판시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다.

7.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음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수의 후견인들 사이에 권한을 정할 수 있다.

8. 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성년후견감독인⁷⁾이 통제할 수 있음

▶▶▶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고,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이러한 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⁸⁾.

9. 중대한 의료조치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때에는 사전, 사후에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7) 2013.7.1.부터 친족회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8) 반면에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은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입을 위협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후견에 관한 사건 관할법원

▶▶▶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II. 후견에 관한 사항 공시

▶▶▶ 후견에 관한 사항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 공시한다.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후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개시 및 종료, 후견인 및 피후견인,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직에서 퇴임한 자 또는 법령상 규정된 사람 등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